

의안번호	2211510
의 퇴 인	임종득의원
회 답 일	2025.08.11.
추 계 번호	25C38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재정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 (재정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¹⁾에 따른 재난 발생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산불 등의 대형 재난에 따라 입원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전원하고 치료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 및 사회 재난과 그에 따른 환자 이송 규모, 유형, 타 의료기관의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는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현행 응급의료체계 및 지원 외의 추가 지원 여부 및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을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의료지원 교육, 이동형병원 관리·운용,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등의 세부 사업을 지원을 위해 2025년 기준 69억 100만원을 배정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